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0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국장 김종호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, 광고사업 계약 체결기한을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명확화(안 제8조제1항)
-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 상위법령과 일치(안 제13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요구 사항으로,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
 - 안 제8조제1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 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없도록 법제처의 수정 요구안으로 보완하였고
 - 안 제13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하고 조문을 일부 수정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,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기간을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의 명확화 (안 제8조)
- 나.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에 적합하도록 정비 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도로명주소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17.9.7. ~ 9.2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”를 “영 제17조에 따른 “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<u>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) ① <u>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③ (생략)</p>	<p>제8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<u>영 제17조에 따른 “해당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) ① ----- <u>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--.</u></p> <p>② ③ (현행과 같음)</p>